



24

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보고

제105회기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 : 위원장 윤희원
서 기 오범열

1. 조직

- 위 원 장 : 윤희원
- 회 계 : 김상규
- 위 원 : 유선모
- 서 기 : 오범열
- 총 무 : 이기덕

2. 회의

1) 제1차 회의

☞ 일 시 : 2020. 11. 13(금) 13:00

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
☞ 결의사항

-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.
위원장: 윤희원 목사, 서기: 오범열 목사, 회계: 김상규 장로,
총무: 이기덕 장로, 위원: 유선모 목사
- ② 교단탈퇴 현황을 위해 전국노회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노회별 교단탈퇴 현황파악 요청 공문을 시행하기로 하다.(제출일시: 2020년 12월 11일(금)까지)
-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12월 15일(화) 오후 1시에 갖기로 하다.

2) 제2차 회의

☞ 일 시 : 2021. 8. 2(월) 13:30

☞ 장 소 : 효성교회당

☞ 결의사항

- ① 노회별 탈퇴현황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다.
가. 총회 161개 노회 중 총회 탈퇴현황 보고를 한 노회는 37개 노회이며 이중 탈퇴자가 없어도 보고한 노회는 5개 노회이다. 보고하지 않은 노회는 124개 노회임을 확인하다.
- ② 32개 노회의 60건 중 교단 탈퇴 유형을 분류하다.
가. 교회, 노회와의 분류: 23건
나. 타교단 가입: 13건
다. 정년문제: 9건
라. 여자목사 안수 문제: 2건
마. WEA문제: 2건
바. 기타: 11건(목회자윤리 2, 교회당 매각 3, 탈법 1, 개인적 4, 기타1)
- ③ 차기회의는 2021년 8월 3일(화) 오후 1시 30분에 갖기로 하다.

3) 제3차 회의

☞ 일 시 : 2021. 8. 3(화) 13:30

☞ 장 소 : 효성교회당

☞ 결의사항

- ① 노회별 제출 현황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분석하다.
 - 가. 교회/노회 분구: 23건, 타교단 가입: 13건 총 36건이 노회 이탈하여 타교단 가입됨을 확인함
 - 나. 목사 정년문제: 9건, 그 외 15건은 총회 복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
 - 다. 이들의 복귀는 총회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됨
- ② 차기회의는 위원별로 복귀 지침을 연구하여 2021년 8월 9일(금) 오후 1시 30분에 모여 복귀 지침안을 논의하기로 하다.

4) 제4차 회의

☞ 일 시 : 2021. 8. 6(금) 13:30

☞ 장 소 : 효성교회당

☞ 결의사항

- ①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를 유지하여 연구하기로 하다.
- ② 탈퇴자 복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, 잔무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.
 - 가. 노회간의 이적/이명 및 지역 경계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및 결의대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.
 - 나. 탈퇴자가 본 소속 노회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다. 탈퇴자의 복귀 신청은 탈퇴후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.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하면 권징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.
 - 라. 노회와 탈퇴한 교회와 목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, 이적과 이명서를 가고자 하는 노회로 보내 게 될 때는 양 노회가 합의했기에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 - 마. 원칙적으로 노회 복귀가 어려우면, 가입하려는 노회로 하여금 총회에 현의하고, 두 노회가 총회의 중재로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, 이적과 이명서를 소속하려는 노회에 보내 종결한다.
 - 바. 다, 라 항목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총회(임원회)가 중재안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실행하여 탈퇴 교회와 목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.



탈퇴자 복귀연구 위원회 최종보고

1. 제105회 총회 수입사항

총회 산하 교회의 노회 이적 및 탈퇴자 복귀에 따른 이명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 연구

2. 전국 노회별 총회 탈퇴자 현황 파악(최근 5년 이내)

- 1) 총회 161개 노회 중에 노회, 총회 탈퇴 현황 보고를 한 노회는 37개 노회(강동, 강원, 경기, 경기 중 부, 경북, 경상, 경서, 경청, 경평, 광주 제일, 남향동, 대경, 대구, 대전중앙, 동부산, 동안주, 동평양, 북평양, 서경, 서대전, 서울, 서울 강남, 서울 한동, 수경, 순천, 용인, 전남, 전북, 제주, 중경기, 중앙, 평안, 함북, 함중)이며, 이중에 탈퇴자가 없어도 보고한 5개 노회임(남향동, 동대구, 북평양, 서서울, 평안. 보고하지 아니한 노회 124개 노회 대부분이 보고할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.
- 2) 보고된 상황으로 32개 노회의 60건 중에서 탈퇴자 유형을 분류해 보면
 - ① 교회, 노회와의 분규로 - 23건
 - ② 타 교단 가입으로 - 13건
 - ③ 정년 문제로 탈퇴 - 9건
 - ④ 여자 목사 안수 문제로 - 2건
 - ⑤ W.E.A 문제로 - 2건
 - ⑥ 기타 11건(목회자의 윤리 문제 2, 교회당 매각 3, 탈법 1, 개인적 4, 기타 1)

3. 노회별 사례 분석

- 1) 교회, 노회의 분규 23건, 타 교단 가입 13건, 총 36건이 노회를 이탈하여 타 교단으로 가입 됨.
- 2) 목사 정년 문제로 9건이 발생하였고, 그 외 나머지 15건은 사례의 유형으로 보아서 본 총회로 복귀할 사항은 아니라 사료됨.
- 3) 교회와 노회의 분규로 발생한 23건과 타 교단 가입 13건을 조사해 보면 내용상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건들과 관련하여 교단 복귀에 대한 총회 차원의 매뉴얼(manual)이 필요함

4. 탈퇴자 복귀 지침 전제사항

- 1) 탈퇴자 복귀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두어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함.
- 2) 탈퇴자 복귀 위원회를 두지 않고 시행하려면 복귀 '지침'을 통해서 총회로 복귀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함.

5. 탈퇴자 복귀에 따른 검토사항

- 1) 목사는 교회의 탈퇴를 총회 헌법상 강도사 인허 서약(정치 14장 제 5조)와 목사 임직 서약(정치 15장 제 10조)에 의하면 금지된 것인데 계속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에 헌법은 권징조례 제 7장의 즉결 처리의 규례 제 54조에 “노회 명부에서 삭제.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.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”고 하여 사실상 탈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실효성 없는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음

- 2) 노회는 정치 제 10장 제 2조에 의하여 “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” 구성되기에 교회와 목사가 노회를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복귀하려면 다시 원 노회로 복귀해야 함. 이는 제100회 총회(2015.9.14. ~ 18)에서 “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소속되었던 노회로만 가입할 수 있다”고 결의되었고, 제101회 총회(2016.9.26. ~ 30)에서도 “교회법과 교단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보류, 교단 탈퇴 후 독립 교단에 가입 이후 다시 합동 교단에 재가입 금지의 건은 제100회 총회 결의”대로 하기로 결의되었음.
- 3) 이러한 결의들은 교회 헌법의 정신을 살리고 그 원칙과 원리를 지켜가기 위함임
- 4) 우리 총회가 제 58회 총회(1973.9.20. ~ 24)에서 참고자료로 ‘정치 문답 조례’를 사용하고 있음. 이 정치 문답 조례 제 365문에도 “교회와 담임목사는 같은 노회에 소속해야 한다. 목사가 교회를 시무하면서 소속 노회를 떠나 타 교파나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, 불명예스러운 일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명 할 수 없다”고 아예, “노회의 허락 없이 불법 이적과 이명을 할 수 없다”고 명시함. 또한, 제 384문에는 “노회를 탈퇴한 목사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 탈퇴한 동일한 노회에 청원서를 내야 한다”고 설명되어 있으며, 제394문에는 “면직 목사의 회복 처분은 반드시 판결한 재판 노회에 해야 한다. ... 회복은 반드시 책별한 그 치리회에서 권고와 동의를 거친 다음에 해 주어야 한다.”라고 명시되어 있음.
- 4) 이렇게 원칙적으로 탈퇴자 복귀는 본래 탈퇴한 노회에서 되어야 함.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. 대부분의 탈퇴가 교회, 노회의 분규(23건)와 타 교단 가입(13건)은 소속된 노회와의 원만한 해결을 가지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이며,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라 유추할 수 있음.
- 5) 총회는 이런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고, 본 총회의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「헌법 정치 제 12장 제 5조 ①, ③, ⑤ 항」에 의거하여 탈퇴자 복귀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함
- 6)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탈퇴자가 본 노회 소속으로는 현재 복귀할 수 없기에 ‘복귀 지침’이 필요함.

5. 탈퇴자 복귀 지침 방안

- 1) 노회 간의 이적·이명 및 지역 경계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및 결의대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탈퇴자가 본 소속 노회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탈퇴자의 복귀 신청은 탈퇴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.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권징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.
- 4) 노회와 탈퇴한 교회와 목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, 이적과 이명서를 가고자 하는 노회로 보내 게 될 때는 양 노회가 합의했기에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- 5) 원칙적으로 노회 복귀가 어려우면, 가입하려는 노회로 하여금 총회에 현의하고, 두 노회가 총회의 중재로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, 이적과 이명서를 소속하려는 노회에 보내 종결한다.
- 6) 3), 4) 항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총회(임원회)가 중재안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실행하여 탈퇴 교회와 목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.